

부록 1: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요약

서론

외국 학생들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는 경우,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서명 교육기관들은 외국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진다.

본 안내서는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이하 “실천요강”)에 관한 개요로, 뉴질랜드 서명 교육기관(또는 해당 기관의 대리인)이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준다.

실천요강이란?

실천요강이란 교육기관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골격을 제시한 문서이다.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기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호 및 조연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 그리고 정보의 제공에만 적용되며, 교육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천요강의 적용 대상은?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을 등록시키는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실천요강은 이들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강제 규정이며 해당 교육기관들은 서명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 유학생”의 정의는?

“외국 유학생”은 뉴질랜드 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의미한다.

실천요강의 사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뉴질랜드 교육기관으로부터 실천요강의 사본을 구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에서 구할 수 있다.

특정 교육기관이 실천요강에 서명한 교육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뉴질랜드 교육부는 실천요강에 서명한 모든 서명 교육기관의 등록부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 여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실천요강 서명 교육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도 없게 된다.

외국 유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처리 방법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대리인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기관의 교장, 외국학생처장, 또는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불만사항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천요강에 의하면 모든 교육기관은 공정하고 합당한 내부적인 불만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불만사항이 있는 학생은 이를 상부 기관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불만사항이 내부적인 처리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국제교육항소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국제교육항소청이란 무엇인가?

국제교육항소청(IEAA)이란 외국 유학생들이 서명 교육기관(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및 조연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기관이다. IEAA 는 실천요강에 명시된 제 기준의 실시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제교육항소청의 연락처는?

국제교육항소청의 주소: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C/- Ministry of Education
Private Bag 47-911
Ponsonby
Auckland

팩스: (09) 374 5403
전화: (09) 374 5481
이메일: info.ieaa@minedu.govt.nz

국제교육항소청의 하는 일은?

국제교육항소청(IEAA)은 외국 유학생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EAA 는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실천요강의 위반 유무를 심사한다. 위반 사항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IEAA 는 실천요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게 직접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제재조치에는 손해배상, 위반사항의 공개 및/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이 포함된다.

IEAA 는 해당 불만사항이 보호 및 관리 차원을 넘어설 경우, 보다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시킬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게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만일 위반사항이 주어진 시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IEAA 는 해당 사항을 감독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IEAA 는 또한 실천요강의 위반 사항이 심각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만일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만 사항을 감독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무엇인가?

감독위원회는 특정 교육기관을 실천요강의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명시키거나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교육기관은 더 이상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 교육시킬 수 없다. 불만사항들을 감독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제 교육항소청에게만 주어져 있다.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요약

실천요강에서는 서명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고도의 전문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모집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최신 내용일 것
- 유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외국 유학생들과의 모든 계약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특수한 필요사항을 수용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이 안전한 숙박 환경에서 살도록 주선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천요강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실천요강에서는 또한 국제교육항소청과 감독위원회를 두고 학생의 불만사항을 접수,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